

「2025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지원모집 공고」 광주 동구 시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사업

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동구가 지원하는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일환으로 광주 동구의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『광주 동구 시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사업』 지원프로그램을 안내 하오니,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3월 20일

광주테크노파크원장

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장

1 지원개요

- **(지원규모)** 총 약 4.2억원
- **(신청자격)**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의료·헬스케어 제품·서비스 보유 창업기업
 - ※ 본사, 지사, 연구소, 공장 소재지 기준이며, 신규사업장 개설(이전)의 경우도 지원가능(단, 이전 의향서 제출 必)
 - ※ 중소기업창업지원법(제2조 및 제25조)에 따른 공고일 기준 신산업*창업 10년 이내인 기업
 - * 신산업분야 : 인공지능, 빅데이터, 바이오, 의료기기 등 27개 분야
- **(지원프로그램 주요내용)**

지원유형	프로그램명	지원내용	지원건수	지원금액	
기획지원	비즈니스 모델(BM) 수립 지원	○ 기술성·사업성 분석 및 시장진출 등 비즈니스 전략 수립 지원	5건 내외	최대 10,000천원/건	
	공동 기술개발(R&D) 기획 지원	○ 기업-병원-연구기관 등 컨소시엄에 기반한 기술개발 과제 기획 지원	5건 내외	최대 5,000천원/건	
실증지원	제품·서비스 실증 지원	○ 제품·서비스의 데이터 확보 및 검증, 고도화 등을 포함한 실증 지원	의료분야	5건 내외	최대 25,000천원/건
			웰니스분야	10건 내외	최대 15,000천원/건
마케팅/투자유치 지원	전시회 참가 지원	○ 브랜드 인지도 증대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전시회 참가 관련 지원	10건 내외	최대 5,000천원/건	
	투자유치 IR 지원	○ 투자유치 IR 교육 및 행사 참가 지원	10건 내외	-	

○ **(지원프로그램 세부사항)**

프로그램명	세부내용	지원기관명
공 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청기업은 지원프로그램별 중복 신청 가능 ○ 지원대상 선정후 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별도 위원회를 통해 세부내용(지원금 포함) 조정후 협약체결 ○ 지원금은 완료보고서 접수 후 지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품·서비스 실증지원 프로그램과 지원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 제외 	광주테크노파크
비즈니스모델(BM) 수립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즈니스 모델 전략, 제품·솔루션 고도화 방안, 인허가 인증, 마케팅 전략 중에서 1개 이상에 대해 BM 수립 ○ 신청기업은 공급기업(컨설팅社 등)을 정하여 신청 	광주테크노파크
공동 기술개발(R&D) 기획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청기업은 목표로 하는 정부 R&D과제를 기재 ○ 선정 시 지원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획위원회 구성 및 공동 운영 	한국마이크로 의료로봇연구원
제품·서비스 실증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청기업은 실증 및 제품·서비스 고도화, 인증 등에 수반되는 제반 경비를 상세하게 기재 ○ 선정 시 지원기관과 협의를 통해 동구 라이프로그 센터 등 실증 장소 제공 ○ 지원금 선집행 및 후정산(정산비용 별도) 	광주테크노파크 (웰니스분야)
		한국마이크로 의료로봇연구원 (의료분야)
전시회 참가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청기업은 참가예정인 전시회 기재 ○ 전시회 부스 이용료, 홍보물 등 상세 내용 기재 ○ 홍보물 제작의 경우 공급기업(디자인社 등)을 정하여 신청 	광주테크노파크
투자유치 IR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청기업은 투자유치 규모 등 요청사항 기재 ○ 선정 시 지원기관에서 안내하는 IR 교육, 투자 유치 행사 등 참가 	광주테크노파크

② **심의방법 및 기준**

- **(심의방법)**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심의 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
- **(심의기준)**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

심의항목	평가지표	배점
지원 필요성 (30)	·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설정의 적정성	15
	· 지원대상 제품/서비스 사양, 현 상황, 애로사항,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	15
내용 타당성 (40)	· 지원내용 범위, 수행내용 및 일정의 구체성	20
	· 지원기업의 수행역량	10
	· 지원금액의 적정성	10
기대효과 (30)	· 사업화 가능성 및 사회적, 지역적 파급효과	15
	· 고용 및 매출 증대 가능성	15
배점 합계		100

○ **(우대가점)**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(최대 3점)

구분	우대가점 기준	증빙서류	가점
1	·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&D 종료(성공)기업	지역산업진흥원 확인	3
2	·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	인증서	1
3	·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	인증서	2
4	·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	인증서 (유효기간에 한함)	1
5	· 「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」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“주의·심각”에 소재하는 중소기업	주관기관 확인	2

3 유의사항

○ **(유사중복 지원불가)**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(주제)로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

- 중복지원을 한 경우,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
-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, 지역특화산업육성(비R&D)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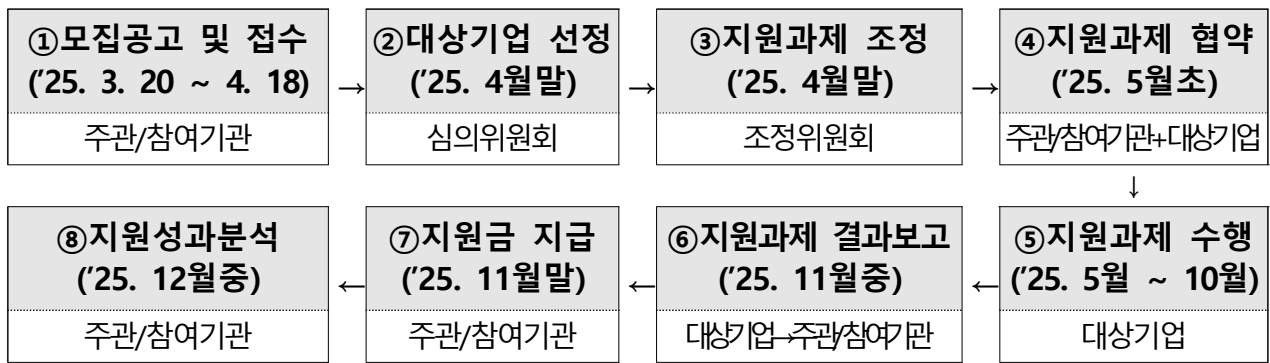
○ **(지원제외 대상)**

사 전 지 원 제 외
<p>1. 기업의 부도</p> <p>2.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</p> <p>3.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</p> <p>4.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)</p> <p>5.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(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%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)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 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"BBB"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,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.)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※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(RCPS)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※ 상기의 신용등급이 'BBB'에는 'BBB+', 'BBB', 'BBB-'를 모두 포함함</p> <p>6.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</p> <p>7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</p>

○ (기타 유의사항)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제출된 서류에 의거하여 심의하며, 제출서류의 수정은 불가함
- 과제수행에 따른 제반 사항은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따라 진행

4 추진절차 및 일정

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일부 지원프로그램별로 상이할 수 있음

5 신청기간 및 방법

- (공고기간) 2025. 3. 20.(목) ~ 4. 18.(금)
- (접수기간) 2025. 4. 7.(월) ~ 4. 18.(금) 18:00 까지
- (신청방법) 온라인 접수
※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(<https://smtech.go.kr/region/rms>)
- (제출서류) 첨부서식 제출 또는 증명서 발급(각 1부)

구분	제출서류	서식 여부	비고
공통	신청서	○	서식 1
공통	사업계획서	○	서식 2
공통	참여의사 및 개인(기업)정보 자료제공·이용 동의서	○	서식 3
공통	신청자격 확인서	○	서식 4
공통	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약약서	○	서식 5
공통	정부사업 수혜이력 및 중복지원 검토 확인서	○	서식 6
공통	법인등기부등본(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본)	-	-
공통	사업자등록증(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본)	-	-
공통	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	-	-
공통	최근 3년간 재무제표('21~'23) * 선정 이후 2024년도 재무제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	-	-
해당시	기업이전 의향서(광주광역시 동구)	○	서식 7
해당시	(해당시) 우대사항 가점 증빙서류	-	-

6 **관련법규** (※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)

- (요령)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
- (지침)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

7 **문의처**

- 지원프로그램 문의처

담당기관 / 지원프로그램		내선번호	전자우편
광주테크노파크	비즈니스모델(BM) 수립 지원	062-602-7276	ley@gjtp.or.kr
	제품·서비스 실증지원(웰니스분야)		
	전시회 참가 지원		
	투자유치 IR지원		
한국마이크로 의료로봇연구원	공동 기술개발(R&D) 기획 지원	062-530-5237	hsy@kimiro.re.kr
	제품·서비스 실증지원(의료분야)		